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5-129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2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(안 제4조)

다.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(안 제5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 7조~제8조)

마. 비용지원 및 기관 협력,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 ‘청년친화도시’ 조항의 신설('23. 3.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8. 28.~9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의 사 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정책”이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4호의 정책을 말한다.
3. “청년친화도시”란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도시를 말 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 다)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청년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2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.
3. 교육, 고용,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4.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1.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
2.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
3.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
4.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
5.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정책연구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·기관·단체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

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)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
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
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 :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윤희주 (☎8642)